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8 .

발 의 자 : 정근수 · 권기만 · 길윤옥
김상조 · 김익수 · 박광석
박교상 · 박순이 · 임춘구
장세만 · 전인철(11인)

1. 제 안 이 유

- 국가의 저출산 · 고령화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재해, 질병 등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

2. 주 요 내 용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함(안 제3조)
- 건강보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함(안 제4조)
- 신청인은 출생신고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서의 지원여부를 결정, 보험기관에 통보하며 보험계약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안 제5조 및 제6조)
-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생아 사망시 지원자격 상실(안 제7조)

-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 (안 제8조)
- 신생아 또는 부모 및 친권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험료 지원중지 및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 (안 제9조)

3. 참고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말한다.
2.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 함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로 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 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시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신청) ①읍·면·동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건강보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장은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

②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환수 및 중지 조치) ①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보험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건강보험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전출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등을 전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시에는 전입지 읍·면·동장에게도 관련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분 만 의 료 기 관		분만 일자	년 월 일
주 소	구미시 읍·면·동 번지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전화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 구미시장 귀하				
확 인 자	소 속	읍면동	직 급	성 명 (서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대장

접수 번호	신 생 아					보호자 (부모 또는 후견인)			전화번호	신 생 아 건강보험 지원여부	신청서 제출일	비고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녀수 (째)	성 명	관 계	주민등록 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장

접수 번호	신 생 아				보호자 (부모 또는 후견인)			전화번호	보 험 료액 지원금액	신청일	지급일	환수		비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자녀수 (째)	성명	관계	주민등록 번호					일자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 전출통보

기관명	신생아 성 명	전 출 자		지원아동과 의관계	현주소	전출지 주소	비고 (전출일)
		성 명	주민번호				

참 고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의자 서명명부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심 조식	심 조식	
임 호국	임 호국	
박 교성	박 교성	
박 순이	박 순이	
김 영복	김 영복	
김 익수	김 익수	
김 상조	김 상조	
장 사현	장 사현	
박 광식	박 광식	
전 인천	전 인천	
최 기만	최 기만	